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34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교홍 · 허종식 · 유동수
모경종 · 김재원 · 손 솔
양문석 · 조계원 · 박찬대
서삼석 · 맹성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등의 공연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공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연시설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공연장의 부족으로 국내 팝스타들이 공연시설을 갖춘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의 방한 기회를 상실시켜 한류 열풍을 경제적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

화·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공연문화 등을 세계적으로 알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둔다(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업시행자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건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2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공연문화 등을 세계적으로 알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문화·체육·관광·상업·숙박·회의·포럼·전시 등(이하 “공연·문화등”이라 한다)의 기능이 집약된 시설을 말한다.
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란 제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의 원칙)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공연·문화등 기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2. 교통·환경·안전 등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3.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4. 지역 문화·경제와의 연계 및 상생·협력
5. 환경·사회·기업과의 상생의 가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법제 정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이 국가 브랜드 제고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관광·문화교류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교통·치안·환경·문화예술 진흥 등과 연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 제6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후보지 선정의 기준 및 절차
 3. 교통·환경·안전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방향
 4. 민간투자 유치 및 재원조달 방안
 5. 지역상생 및 문화예술 진흥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

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추진 일정 및 단계별 목표
3. 공연장·부대시설·배후지 등의 배치계획
4. 대중교통·도로·주차시설 등 교통과 관련된 계획
5. 환경·소음·조명 등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6. 안전·위기관리 및 방재계획
7.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계획
8. 지역상생 프로그램 및 이행계획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이하 “특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특별구역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특별구역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특별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시행자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
2.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개발·운영 경험
3. 안전관리 및 환경·지역 등 상생 계획의 적정성
4. 민간투자 구조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

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4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괄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계획·건축에 관한 특례) ①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

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1.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화 또는 변경 절차의 간소화
3.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용도 제한 완화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범위·기준 및 절차는 안전·환경·경관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통영향평가”라 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해당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방법,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필수부대시설(안전·소방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비
2. 공공성을 위한 문화·공익시설 설치비
3. 교통·환경·안전 관련 기반시설 설치비

제18조(세제 감면) ① 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 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제20조(운영기관의 설립·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2. 공연·행사 유치 및 마케팅
3.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4. 환경·지역 등과의 상생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운영기관의 설립·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국가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기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의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구조·위험분담·공공성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

계약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객·종사자·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붕괴·테러·대형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2. 대규모 인원의 관리 및 피난 유도 계획
3. 설비·전기·무대장치 등 시설안전 점검계획
4.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실태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지역 등 상생 의무) ① 사업시행자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운영 과정에서 환경 등과의 상생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친환경 설계·운영
2. 공정한 고용·근로환경 조성 및 차별금지
3. 투명한 조직 운영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② 사업시행자 및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생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 문화예술인·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
2.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3. 지역 주민 대상 문화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공연·문화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특례와 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와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